성주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조례안

의 안 번 호	

제출년월일 : 2004. 3 .
제 출 자 : 성 주 군 수

1. 제안이유

수도법 제19조의 2에 의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구성을 위한 설치 조례를 제정하여 정기적인 수질검사 실시 및 공표와 수질 관리기술 자문을 도모하여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코자 함.

2. 주요내용

o 위원회의 기능
- 수돗물의 정기적 수질검사 실시 및 공표
-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기술의 자문 등

o 위원회 구성
-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 8인 이내로 구성

o 임기와 직무
-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하고 연임가능.

3. 조례안 : 붙임

4. 신구조문대비표 : 해당없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련자료 : 수도법 제19조의 2항

나. 입법예고
- 예고기간 : 2004. 2. 11 ~ 3. 1 (20일간)
- 예고방법 : 성주군공보, 군청 및 읍.면게시판 게시, 군 홈페이지 게재
- 예고결과 : 의견없음

성주군 조례 제 호

성주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수도법 제 19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성주군수돗물수질 평가위원회(이하"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하고, 그 조직과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.

1. 수돗물의 정기적 수질검사 실시 및 공표
2.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기술의 자문
3. 기타 상수도 수질과 관련하여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

제3조(구성)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

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지명한다.

1. 상수도 수질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2. 군민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및 일반주민(여성단체 포함)
3. 상수도 업무에 관계하는 공무원

제4조(임기 및 직무)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임을 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 또는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.

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5조(위원의 해촉)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
2.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(6개월이상)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

3.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,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하였을 때
4.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
5. 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훼손하였을 때

②위원이 임기 만료전에 해촉된 때에는 군수는 후임자를 위촉하거나 지명 할 수 있다.

제6조(회의 및 의사)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위원장은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.

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.

제7조(의견의 청취)위원회는 그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8조(간사) ①위원회의 안건작성, 회의록 작성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.

② 간사는 상수도담당이 된다.

제9조(수당 등) ①위원회의 회의참석 또는 수질검사, 시료채취에 참여한 공무원이 아닌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"성주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"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②위원회에서 수돗물 수질평가를 위하여 외부의 먹는물 수질검사 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출할 수 있다.

제10조(통보) 위원장은 회의 개최결과 상수도 수질향상 방안등 중요한 자문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11조(운영세칙)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 (다른 조례의 폐지)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성주군상수도수질감시 위원회운영 조례를 폐지한다.